영덕군 고시 제 2013 - 35호

·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의 승객,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. 07.

덕 군 수

안전운항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제 1 조(목적)

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35조제1항,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,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,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자(선장, 선원포함)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

제 3 조(영업시간)

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(이하"낚시어선"이라한다)의 안전을 위하여 **영업시간은 04:00~20:00까지**로 한다. 다만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 및 레이다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 후 부터 일몰 30분 전 까지로 한다.

제 4 조(안전운항 등 준수사항)

- ① 낚시어선어업자 및 선원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낚시어선어업자는 출항전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 준수사항 및 선장의 지도·요구 사항을 따라야 함을 교육 하여야 한다.
 - 2. 낚시어선업자(선장·선원) 및 승객은 안전을 위하여 승선과 동시 하선시 까지 **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**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.
 - 3. 낚시어선어업자는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기상악화등 긴급상황 발생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 조치 하여야 한다.
 - 4. 낚시어선어업자는 타 법에 의해 제한 또는 통제된 구역으로 낚시객을 안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 - 5. 낚시어선어업자가 경상북도내 타 시·군의 관할수역으로 안내할 때에는 해당구역 관할 시장·군수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준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 승객은 안전운항,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2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도내용 및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.
 - 3. 선내에서 음주 행위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4. 안전 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승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.
 - 5. 바다에 오 · 폐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,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.
 - 6.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류의 금지체장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7. 낚시중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구명조끼는 착용한다.

제 5 조(기타 준수사항)

- ① 낚시어선어업자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토록 지도 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**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**과 <u>고시</u> <u>사항</u>을 승객이 잘 볼 수 있게 낚시어선에 게시 하여야 한다.

부 치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, 영덕군 고시 제 2006- 364호는 폐지한다.